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24 선고 2021가단445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명천

담당변호사 천병주

변 론 종 결 2021. 6. 29.

판 결 선 고 2021. 8.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2020. 7. 1. 체결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7,718,256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718,25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C에 대한 양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1. 9. 선고 2006가소1841775 판결로 확정되었다.

C은 망 D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을 상속받아야 하는데, 피고와 사이에 위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상속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하였다. 이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이다.

그러므로 위 상속재산 분할협이는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원고가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는 C에 대한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그리고 C은 망 D 생전에 특별수익을 하였으므로 구체적인 상속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2. 판단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사람은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한정되는바,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이 된 사해행위의 수익자는,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사해행위에 의하여 얻은 이익을 상실하고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의 채권이 소멸하면 그와 같은 이익의 상실을 면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 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4849 판결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은 C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1. 9. 선고 2006가소1841775 판결의 채권인데, 위 판결이 선고일 무렵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므로 위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민법 제165조 제1항, 제178조 제2항)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있고,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피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재경

목 록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 고양시 덕양구 아파트 동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 제 20층 호

84.98㎡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 경기 고양시 덕양구 대36108.3㎡

대지권의 종류 : 1 소 유 권

대지권의 비율 : 36108.3분의 42.986

-----미고 소유 중 일부-----

